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87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6.

발 의 자 : 김상훈 · 김선교 · 최은석
주호영 · 박대출 · 고동진
윤한홍 · 이현승 · 박충권
강대식 · 진종오 · 이만희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속도를 정의에서 25km/h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, 다른 자동차등과 다르게 도로의 구역이나 구간별 속도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.

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편의성으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, 2024년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,232건으로, 2017년 대비 약 20배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도 함께 급증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의 구역 또는 구간별 통행속도 제한 등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

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에서의 통행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, 시·도경찰청장이 도로의 지역 또는 구간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, 최고속도 위반 시 처벌 조항

을 신설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2 및 제157조제3호의2 신설).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)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② 시·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.

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57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5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7조의2(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)</u> ① <u>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</u> ② <u>시·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.</u> ③ <u>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
제15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	제157조(벌칙) ----- ----- -----

과료에 처한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4. (생 략)	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3의2.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</u> <u>여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</u> <u>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5</u> <u>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개</u> <u>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</u> 4. (현행과 같음)
--	---